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광역지방자치단체 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38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	10
【참고 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10
【참고 2】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인구 현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대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u>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함)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가 설치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¹⁾

1) 법학전문대학원법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

하고 있는바, 2024년 현재 총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음.²⁾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과 정원은 2008년 당시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5대 권역(서울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³⁾에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2007년에 결정된 총 정원 2,000명을 2008년 9월에 각 권역별로 25개 대학에 배분⁴⁾하였음.

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2) 【참고 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심사 기본방향(2007.10.)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
- 각 권역내 설치인가대학 선정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현재 고등법원은 6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추가)에 설치되어 있음.

고등법원 소재지	지역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대구, 경북
부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광주, 전남,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2007.12.)

-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대 48% 비율로 배분함
- ※ 인구수, 지역내 총생산, 사건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과정에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pm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

구분	수도권(15개교, 1,140명)	지방권(10개교, 860명)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주: () 숫자는 각 학교 입학정원임

자료: 로스쿨인사이드(2024.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개정안은 과거 법적 근거 없이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설치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법률에 명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울공화국’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따른 ‘지역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새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 2,000명을 늘리면서 설치할 것인지,⁵⁾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이 경우 새로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만 늘릴 것인지,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까지 재조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6)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이를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증원 또는 조정하는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법조인력 수급 계획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규로 설치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6)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인구와 대학 현황⁷⁾ 등 교육여건 및 설립인가 요건 충족 여부와 설립·경영자의 투자 규모⁸⁾와 의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확보해야 할 교원 수 등의 인적 기준(제16조)과 교육과정 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⁹⁾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는 대학의 충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투자를 실시했음에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

7) 참고 2.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인구 현황

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2024.11.13.

“개정안이 시행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신설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 및 입학정원,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9)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6조(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은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이 발생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¹⁰⁾가 있음.

셋째, 2016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¹¹⁾이 있음.

< 회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

회차 (시험 실시연도)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제1회(2012)	1,698	1,665	1,451	87.14
제2회(2013)	2,095	2,046	1,538	75.17
제3회(2014)	2,432	2,292	1,550	67.62
제4회(2015)	2,704	2,561	1,565	61.10
제5회(2016)	3,115	2,864	1,581	55.20
제6회(2017)	3,306	3,110	1,600	51.44
제7회(2018)	3,490	3,240	1,599	49.35
제8회(2019)	3,617	3,330	1,691	50.78
제9회(2020)	3,592	3,316	1,768	53.3
제10회(2021)	3,497	3,156	1,706	54.06
제11회(2022)	3,528	3,197	1,712	53.55
제12회(2023)	3,644	3,255	1,725	52.99
제13회(2024)	3,736	3,290	1,745	53.04

자료: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변호사시험법」 제7조¹²⁾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및 응시횟수를

10) mbc, 로스쿨 인가 반발…후유증 심각, 2008.2.4.

11) 법률저널, [분석] 로스쿨 나온 1,324명, ‘오탈’에 법조인 꿈 무산, 2022.11.17.

1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비싼 등록금과 시간, 노력을 들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을 5번 탈락하여 영구히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소위 ‘오탈자’의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기 108명, 2기 173명, 3기 160명, 4기 237명, 5기 213명, 6기 244명, 7기 207명으로 누적인원은 총 1,342명에 달하고 있어,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의 증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가로 신설되는 경우 이러한 ‘오탈자’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설치 시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입학정원 사전협의 등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의 대학 여건과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계부처인 법무부 또한 특정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형평성, 기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의 감축 없이 특정 지역에 순증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했을 때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우려되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정부와 같이 법 개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단체 의견> —

◦ (법학전문대학원 11개교) 신중검토

- (공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당시 고등법원 소재지(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단위로 하는 5대 권역 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였음
 - ※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 (강원대) 소규모 인가정원 대학에 대한 정원확대가 우선 되어야 함
- (이화여대)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관리로 입학정원만 늘어나게 될 경우 법전문 교육과정 내 문제점 발생 우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중검토

-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대학 중 법전문 유치원 원하면서 동시에 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선정 대학과의 역차별 논란, 또한 입학정원에 대한 고려 없음

◦ (대한변호사협회) 신중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신규 설치에 지리적인 분배만을 고려하기 어렵고, 법조인력 수급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법조인의 추가배출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문 의 처

02) 6788-5188

【참고 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25개, 정원 2,000명)

□ 서울권역 15개교(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교(860명)

권역	인가대학 수 (배정입학정원)	대 학 명	배 정 입학정원 (‘09학년도 이후)	특성화 분야
서울 권역	15개교 (1,140명)	건 국 대	40명	부동산관련법
		경 희 대	60명	글로벌 기업법무
		고 려 대	120명	GLP(국제법무)
		서 강 대	40명	기업법(세부특성화: 금융법)
		서 울 대	150명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성균관대	120명	기업법무
		서울시립대	50명	조세법
		연 세 대	120명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이화여대	100명	생명의료법, 젠더법
		중 앙 대	50명	문화법
		한국외대	50명	국제지역법조인양성
		한 양 대	100명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 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아 주 대	50명	중소기업법무
		인 하 대	50명	물류법, 지적재산권
		강 원 대	40명	환경
대전 권역	2개교 (170명)	충 남 대	100명	지적재산권
		충 북 대	70명	과학기술법
광주 권역	4개교 (300명)	전 남 대	120명	공익인권법
		원 광 대	60명	의생명과학법
		전 북 대	80명	동북아법
		제 주 대	40명	국제법무
대구 권역	2개교 (190명)	경 북 대	120명	IT법
		영 남 대	70명	공익·인권
부산 권역	2개교 (200명)	동 아 대	80명	국제상거래법
		부 산 대	120명	금융·해운통상

자료: 교육부

【참고 2】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인구 현황

지역	법학과(전공) 설치 대학(학사)		법학과(전공) 설치 대학원(석사)		인구수
	학교수 (교)	학교명	학교수 (교)	학교명	
울산	1	울산대	1	울산대	110만명
세종	1	홍익대 (세종)	-	-	39만명
충남	4	국립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5	국립공주대 남서울대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214만명
전남	2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2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179만명
경남	5	경남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영산대 인제대	4	경남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인제대	323만명

※ 학교수 현황('24.4. 기준) : 교육통계연보

※ 인구수 현황('24.10. 기준) : 국가통계포털, 천명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교육부